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2. 22 선고 2020나427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2. 22 선고 2020나42751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1. 10 선고 2019가단11333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

담당변호사 이제혁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1.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

담당변호사 김도형

피고, 피항소인 2. C

변론종결 2021. 10. 20.

판결선고 2021. 12. 22.

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1. 10. 선고 2019가단11333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
 - 가. 1) 피고 B 주식회사와 E 사이에 2018. 8. 22.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 - 2) 피고 B 주식회사는 E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. 8. 23. 접수 제556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 - 나. 1) 피고 B 주식회사와 F 사이에 2018. 8. 22.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 - 2) 피고 B 주식회사는 F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. 8. 23. 접수 제5564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,
 - 가. 1) 피고 B 주식회사와 E 사이에 2018. 9. 11.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2) 피고 B 주식회사는 E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. 9. 12. 접수 제602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 - 나. 1) 피고 B 주식회사와 F 사이에 2018. 9. 11.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 - 2) 피고 B 주식회사는 F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. 9. 12. 접수 제602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G호, H호,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I호, J호, K호, L호에 관하여,

가. 각 2018. 11. 5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. 11. 6. 접수 제738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,

나. 각 2018. 11. 5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. 11. 6. 접수 제738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항소취지]

1. 원고

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청구취지 중 제1의 나항, 제2의 나항, 제3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2. 피고 B 주식회사

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원고는 당심에서 F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서 E의 F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원고는 원고가 E에게 대여한 돈이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F이 이 사건 토지 중 1/5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이 있을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, E의 정산금 채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및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

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]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창열, 판사 정우혁, 판사 정현서

별지